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주요골자

양돈업 허가 상한선 모돈 2천두로 상향 조정

- 홍보부 -

농림수산부는 WTO 체제하에서 양돈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지난 '94. 12. 31에 축산법을 개정 공포한 후, 구체적인 양돈산업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한 축산법 시행규칙을 지난 7월 28일자로 개정 공포하였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대상의 축산업 규모를 모돈 200두 이상 500두 미만에서 모돈 500두 이상 1,000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허가 규모는 모돈 500두 이상에서 1,000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축산업의 허가상한선은 현행 모돈 1,000두에서 2,000두로 늘린 반면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열화 생산사업을 위하여 사육하는 모돈과 축산업 협동조합·축산업 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

인이 사육하는 모돈의 경우에는 허가상한선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

특히 허가·등록규모의 양돈업과 양계업을 영위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중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자”를 삭제함으로써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부는 “97년 7월부터 수입이 자유화되면 자율적인 경쟁체제 도입에 의한 국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육 규제의 완전 철폐가 바람직하나 단계적인 완화를 희망하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육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말하고 “중소기업사업 조정법에 의한 대기업은 상업·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 규모가 2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식육판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에 양돈업을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어 중소기업사업법에 의

한 대기업의 참여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 등록·허가(변경) 신청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시·군·구(경유), 시·도(처리)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⑥항의 사업명은 종돈업, 종계업, 양돈업, 양계업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⑧항의 사육마리수는 종돈, 종계, 모돈, 산란계, 육계, 산란용 중병아리 등 허가·등록대상 가축의 마리수를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중 종돈등록증명서 및 종계검정확인서는 국내의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과태료 규정 - 종축업자, 허가·등록축산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허가·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 제26조(종축업의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규모 이상의 종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종축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축산법 제27조(축산업의 등록 또는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거나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됨). - 허가·등록 축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로써 이제껏 축산업을 할 수 없었던 대기업의 기준이 현행 3종에서 2종으로 완화되었고 상업·서비스업의 2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업체 이외에 제조업 3백명 이상, 건설업 2백명 이상 고용한 업체도 축산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등록 또는 허가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한 기간내에 해당 서식(19호)에 의한 축산업 등록변경 신고서 또는 축산업 허가변경승인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군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돈업에 있어서는 도태시키고자 하는 모돈이 분만·포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모돈의 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로서 초과하게 된 모돈의 두수가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모돈 두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때(등록한 양돈업의 경우에는 전체 모돈 수가 1,000두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등록한 모돈 두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외의 개정된 내용으로는 관상용 조류를 기타 가축으로 분류함으로써 그동안 주관부처가 없어 사육시설 설치 등에 애로를 겪고 있던 관상용 조류 사육농가의 양축활동을 원활하게 하였다.

또한 축산물 수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수매하여 비축 할 수 있는 급냉시설과 비축시설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가축시장에서 거래할 가축의 종류는 한우·한우와의 교잡우 및 육우로 한다”는 조항과 “가축을 계통출하하거나 읍·면·동장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한 경우에는 가축시장 밖에서 이를 거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하였다.